

도시관리계획(한남동 732-20 외 8필지) 지구단위계획 실효, 도시계획시설(문화시설)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-449호(2021.8.19.)로 결정된 도시관리계획(이태원로 주변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실효되었기에 고시하고,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때까지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시설(문화시설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4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실효 고시하고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6년 9월 3일
용산구청장

1. 실효일자 : 2026.8.20.(고시일 : 2026.9.3.)

2. 실효사유

가. 지구단위계획
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3조 제2항에 따라 주민제안으로 결정된 지구단위계획의 경우, 고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5년이 된 날의 다음날에 그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효력을 잃는다.

나. 도시계획시설(문화시설)
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4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.

3. 실효된 지구단위계획 내용

-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-449호(2021.8.19.)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된 한남동 732-20 외 8필지 지구단위계획 결정 사항

4. 실효된 도시계획시설 내용 : 문화시설(1,894.2㎡, 한남동 732-20)

- ※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-449호(2021.8.19.)에 따라 폐지 결정된 문화시설은 지구단위계획 실효로 종전 용도로 환원되나, 환원된 시설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48조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대상에 해당하여 최종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(실효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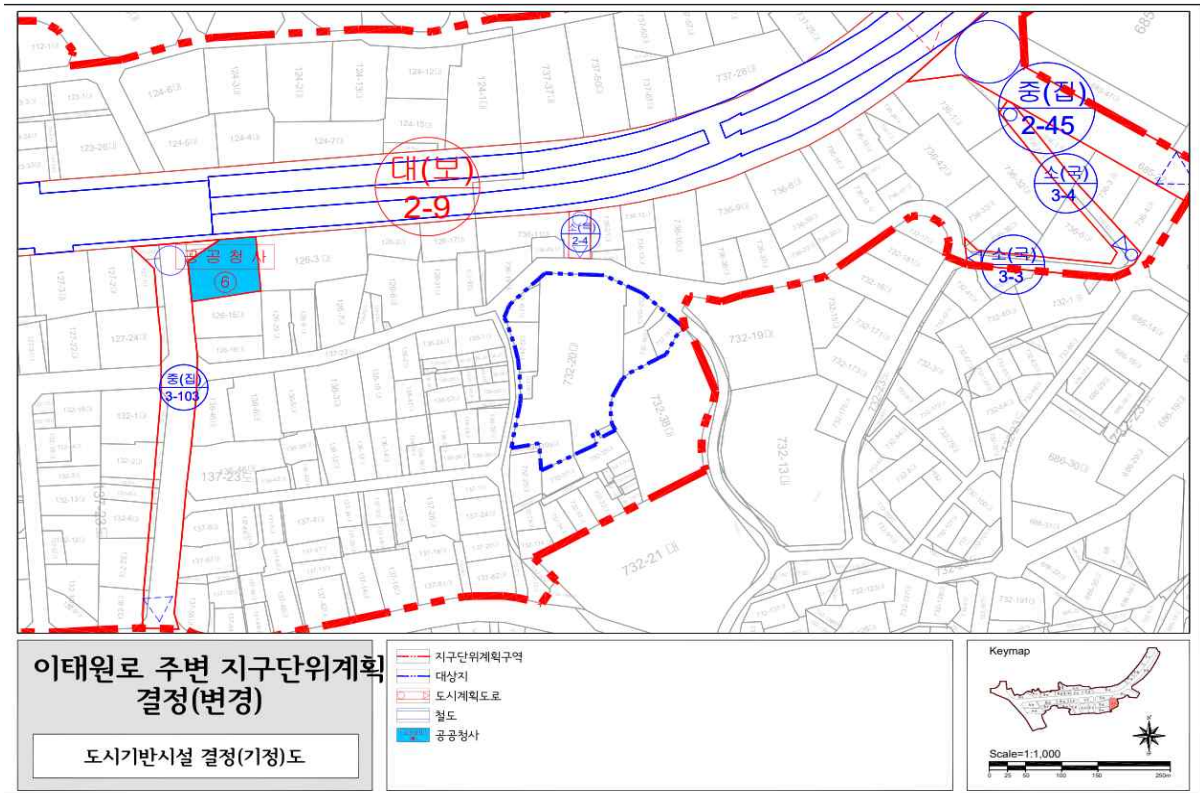
5. 관계도면 : 붙임 참조

- ※ 첨부된 도면은(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)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, 그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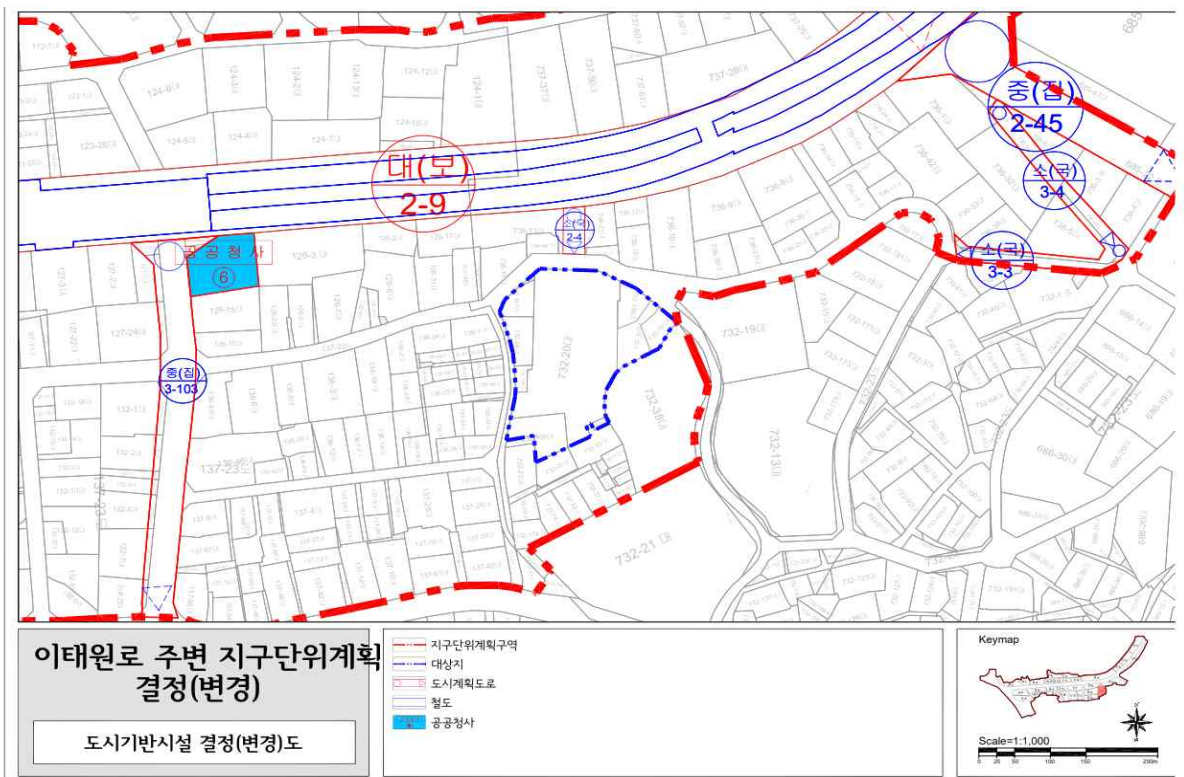
6. 그 밖에 사항은 용산구청 도시계획과(☎02-2199-7414)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

【붙임】

■ 도시기반시설 결정(기정)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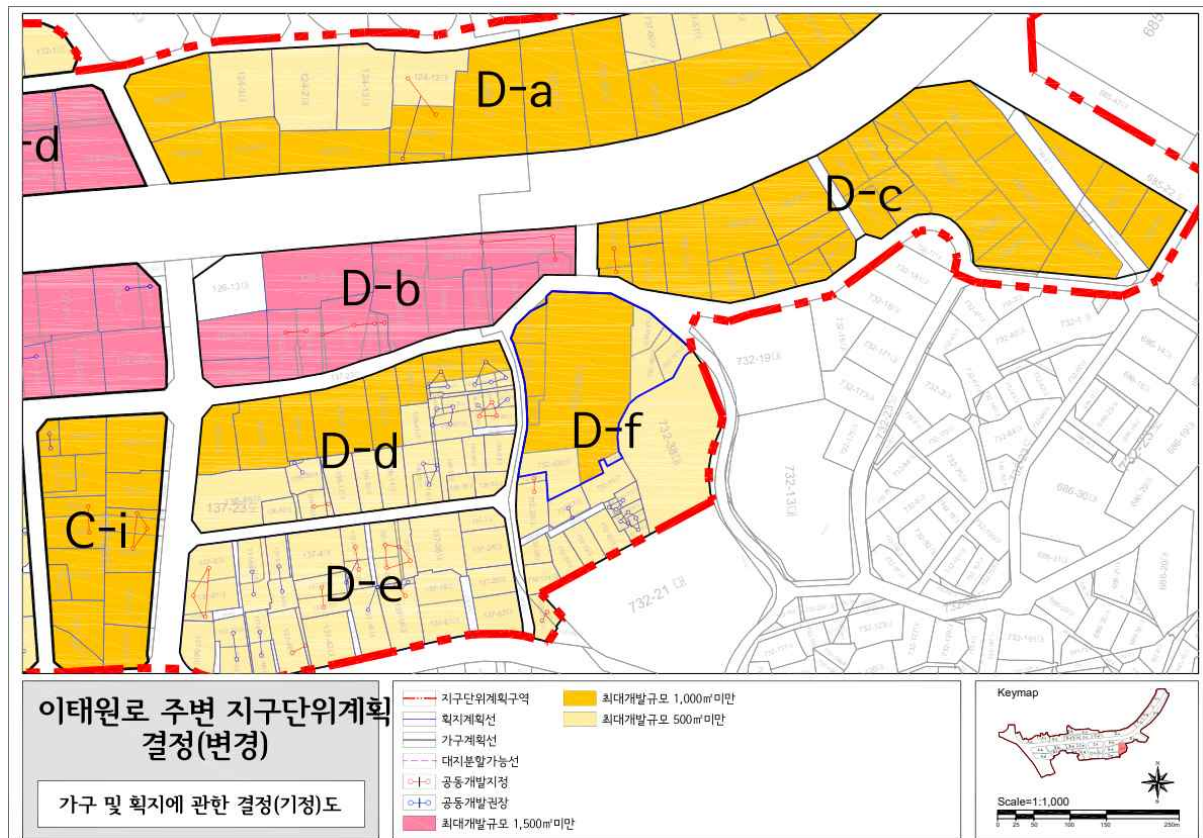


■ 도시기반시설 결정(변경)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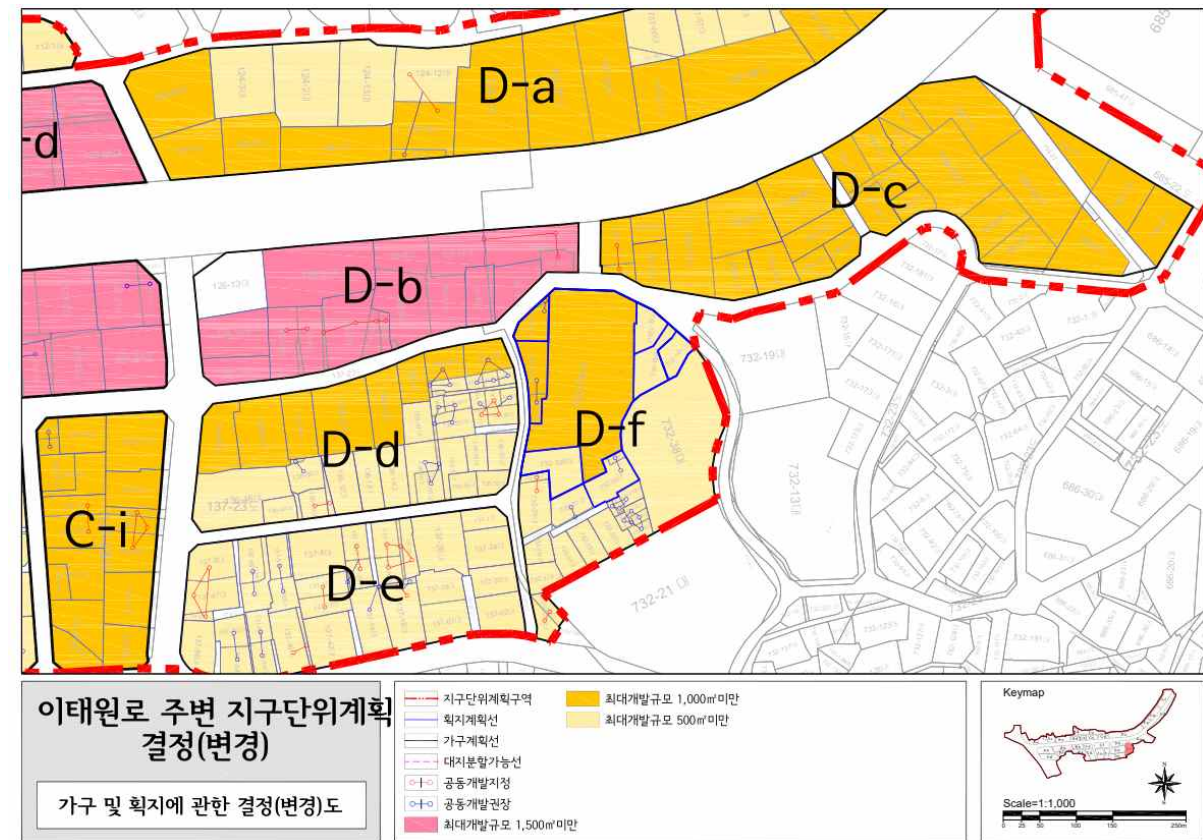


※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-449호(2021.8.19.)에 따라 폐지 결정된 문화시설은 지구단위계획 실효로 종전 용도로 환원되나, 환원된 시설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48조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대상에 해당하여 최종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(실효)

■ 가구 및 획지에 관한결정 (기정)도



■ 가구 및 획지에 관한결정 (변경)도



■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(기정)도



■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(변경)도

